

경희대학교 대학원학칙

시행 : 2021.09.01.

- 제53조(학위지도교수) ① 학위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, 부교수, 조교수에 한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은 외부 인사를 학위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② 학위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논문지도, 논문대체 활동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학생의 학술·연구활동과 학위 청구논문 작성, 학위취득을 위한 활동을 지도한다.

경희대학교 대학원학칙시행세칙

시행 : 2020.09.01.

- 제20조(학위지도교수)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학위지도교수는 본교의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한다.
- ②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, 통합 및 박사 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학위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공동지도교수, 학과간협동과정, 학·연·산협동과정인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은 예외조치 할 수 있다.

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내규

시행 : 2022.03.01.

제13장 학위지도교수의 배정 및 변경

- 제62조(학위지도교수의 자격 및 배정) ① 학위지도교수는 학칙 제53조, 학칙 시행세칙 제20조 및 본 내규 [별표2]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② 각 학과장은 2학기 내에 학위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예약입학제 및 학·석사연계과정, 편입생의 지도교수 배정시기는 따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④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위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3조(학위지도교수 배정절차) 학과장은 소속 학과 학위과정생의 학위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4조(명예교수 지도교수배정)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논문의 공동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.

제65조(학위지도교수의 변경) 학위지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"변경사유"라 한다)에는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
1. 퇴직한 경우
2. 1년을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하게 된 경우
3. 1년을 초과하여 휴직한 경우
4.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66조(학위지도교수 변경절차) 학과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